

1. 개정이유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, 타법 개정, 기존 제도 운영 상 미비 사항 보완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

2. 주요내용

가.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조항 구체화

- 1) 환경컨설팅회사의 지도·점검 및 자료제출 시에 「행정조사기본법」의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(안 제33조의12 신설)
- 2) 환경표지 등 인증이 무단사용된 제품에 대한 표시·광고를 수정·삭제하는 절차 규정(안 제33조의18 신설)
- 3) 환경표지 등 인증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공개 절차 규정(안 제33조의19 신설)

나. 현행제도 운영상 보완

- 1) 녹색기업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보완 및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지정기준 보완 (안 제33조의2 및 안 제33조의4 개정)
- 2)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여, 법 적용시 자의적 집행 및 국민의 권리 침해 여지를 해소하고자 함 (안 별표 8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(종전의 제3호) 중 “공공폐수처리시설”을 “공공폐수처리시설(폐수관로를 포함한다.)”로 한다.

3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(종전의 제2호) 중 “공공폐수처리시설”을 “공공폐수처리시설(폐수관로를 포함한다.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사장”을 “이사장 또는 「하수도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장”으로 한다.
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

제30조제2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32조 전단 중 “시·도지사는”을 “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시·도지사가”를 각각 “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”로 한다.

제33조의2제2항 후단 중 “들어야 한다”를 “들어야 하며, 녹색기업 지정
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
다”로 한다.

제33조의4제1항제2호 본문 중 “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”를 “3년
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“영
제22조의7제1호”를 “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”로 한다.

제33조의6제2항 중 “법 제16조의3”을 “법 제16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3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22조의7제4호”를 “영 제22조의7제1
항제4호”로 한다.

제33조의12부터 제33조의16까지를 각각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까
지로 하고, 제33조의12, 제33조의18 및 제33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
신설한다.

제33조의12(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·점검 등) 법 제16조의6제4항
에 따른 지도·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「행정조
사기본법」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3조의18(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) ①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
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

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되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신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33조의19(위반내용 등 공개 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22조제5항 후단 및 영 제27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위반내용 등의 공개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개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될 경우 검토한 후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경우 관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다.

별표 8 제1호가목 후단 중 “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”을 “기간의 계산”으로, “최초로 행정처분을 한”을 “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

다음 차수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6호 중 “국내외의 사용실적(사용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,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”을 “신청인”으로, “서류”를 “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

별표 8 제1호가목 후단 중 “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”을 “기간의 계산”으로, “최초로 행정처분을 한”을 “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환경시설)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	제2조(환경시설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1조의4 <u>에 따른 완충저류시설</u>
3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에 따른 <u>공공폐수처리시설</u>	4. ----- -- <u>공공폐수처리시설(폐수관 로를 포함한다.)</u>
4. ~ 8. (생 략)	5. ~ 9. (현행 제4호부터 제8호 까지와 같음)
제4조(환경기술 실용화 촉진사업 의 추진절차 등) ①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7조제 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<u>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 시장 · 광역시장 · 도지사 · 특별</u>	<u><삭 제></u>

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.

1. 해당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 명세서(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)

2. 해당 사업의 설계도서 사본

3.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하나 이상의 시설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

4.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

② 영 제17조제2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한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고, 공개 모집을 통하여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자로 하여금 그의 부담으로 해당 환경시설을 설치하게 하고, 시험운전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시설에 사용된 신기술이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환경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신기술, 예산 절약의 기준,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성공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 및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9조(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) ①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(이하 “기술진단”이라 한다)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삭 제

<신 설>
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

3. 4. (생 략)

제9조(기술진단 대상 시설 등) ①

-----.

2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1조의4에 따른 완충저류시설

3. -----
-- 공공폐수처리시설(폐수관로를 포함한다.)

4.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

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진단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삭제

제30조(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) ① (생략)

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② -----

-- 이사장 또는 「하수도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장---.

1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

-----.

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해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제31조(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) ①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 제22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32조(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) 시·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

⑤ -----

----- 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청) ① -----

----- 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의 공고) 시·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은 -----

공고하여야 한다. 환경전문공사
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
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33조(시공감리자) ① 법 제16조
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시
공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
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영업
정지처분을 받지 아니한 환경전
문공사업자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가
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
에는 미리 해당 환경시설의 설
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2(녹색기업의 지정 등)

① (생략)

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
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녹
색기업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해
당 사업장이 제33조의4에 따른
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
후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에 적
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
색기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이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
는 지방환경청장은 해당 사업장
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
-----.

-----.

제33조(시공감리자) ① -----
----- 시·도지사나 대
도시의 장이 -----

-----.

② ----- 시·도지사나
대도시의 장이 -----

-----.

제33조의2(녹색기업의 지정 등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삭 제

④ · ⑤ (생 략)

제33조의4(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)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
2. 녹색기업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호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. 다만, 영 제22조의7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② (생 략)

제33조의6(녹색기업에 대한 관리)

① (생 략)

②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한 결과 법 제16조의3 각

----- 들어야 하며, 녹색기업
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의
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4(녹색기업의 지정 기준 등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3년 이내에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-----

----- 영 제22조의7제1항제1호 -----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6(녹색기업에 대한 관리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법 제16조의3제1항

호에서 정한 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9(녹색기업의 지정취소) 영 제22조의7제4호에서 “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제33조의12 ~ 제33조의16 (생략)

<신설>

--.

제33조의9(녹색기업의 지정취소) 영 제22조의7제1항제4호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33조의12(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도·점검 등) 법 제16조의 6제4항에 따른 지도·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3조의13 ~ 제33조의17 (현행 제33조의12부터 제33조의16까지와 같음)

제33조의18(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통보 등) ①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가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할 경우 해당되는 통신판매중개자에

<신 설>

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통신 판매중개자는 14일 이내에 해당 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33조의19(위반내용 등 공개 방

법 및 절차) ① 법 제22조제5항 후단 및 영 제27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위반내용 등의 공개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공개 대상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될 경우 검토한 후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경우 관보 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할 수 있다.